

# 2026년 확장형 전자출판물 제작 지원 사업 신청 공고



전자출판 산업 고도화와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출판콘텐츠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2026년 확장형 전자출판물 제작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판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 04. 17.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사업 개요

**사업명** 2026년 확장형 전자출판물 제작 지원

**사업목적** 전자출판 산업 고도화 및 콘텐츠 경쟁력 강화 도모, 신규 출판콘텐츠 시장 창출

**사업기간** 2026. 1. ~ 12.

## 지원 개요

**지원자격** 국내 출판사 ※ 출판사가 주관기관으로 신청, 필요 시 제작(개발)사와 컨소시엄 구성 가능

**지원규모** 250백만원(총 5개사, 출판사당 최대 50백만원) ※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지원대상** 멀티미디어·인터랙션 요소(영상, 오디오, 애니메이션, 사용자 참여 기능 등)가 결합된 확장형 전자출판 콘텐츠 ※ 분야, 형식 제한 없음

### 지원 가능 유형(예시)

- 오디오, 영상,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미디어 요소가 포함된 콘텐츠
- 독자 참여형, 반응형 기능이 구현된 인터랙티브 콘텐츠
- 교육, 체험, 스토리텔링 등 목적에 따라 기능이 확장된 콘텐츠

### 지원 불가 유형(예시)

- 단순 텍스트, 이미지 중심 콘텐츠
- 미디어 요소가 콘텐츠 내용 전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콘텐츠
- 종이책 또는 기존 전자책의 단순 변환·재편집 수준의 콘텐츠
- 공개된 자료를 단순 재구성·편집한 콘텐츠

## 지원내용

- 확장형 전자출판물 제작비 지원(종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지원 가능 항목
· 제작 참여 인력 인건비(기획, 편집, 디자인, 개발 등)
· 콘텐츠 제작비(동영상, 음원, 이미지, 인터랙션 등 미디어 요소 제작)
· 외주 용역비(동영상 제작, 교정교열, 성우 녹음, 앱 제작 등)
· 홍보·마케팅 비용(영상 홍보물 제작, 온라인 광고, 홍보물 제작 등)
지원 불가 항목
· 경상비(통신비, 임대료, 식대 등)
·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임직원,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 업체 또는 단체 포함)
· 대표자 및 임직원 친인척 인건비
· 저자 인세 및 저작권 사용료
· 소프트웨어 이용료 등 수수료
· 기타 공고 및 관련 규정상 지원이 제한되는 항목

- 진행 과정 공유 및 기술 점검을 위한 **선정사 간 네트워킹** 지원
- 결과 공유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최종 성과교류회** 개최 지원

## 지원조건

- 신청 콘텐츠가 모든 저작권자(글·그림·사진 저자, 역자 등)와의 계약에서 2차적 저작물 또는 '전송권'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을 확보해야 함
- 제작 후 ISBN 발급 및 1개월 내 유통 또는 웹/앱 형태로 공개(일반 이용자 접근 가능)해야 함

##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6. 4. 17.(금) ~ 5. 7.(목) 16:00 (21일간) ※ 마감 기한 준수**

**신청방법**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ebookbaro7@kpipe.or.kr](mailto:ebookbaro7@kpipe.or.kr))

※ 메일제목 : [출판사명] 2026년 확장형 전자출판물 제작 지원 사업 신청

※ 출판사당 최대 3종 신청 가능, 최대 1종 선정 가능

## 제출서류

※ 첨부파일명 : 2026년 확장형 전자출판물 제작 지원 사업신청서(출판사명).zip

- **2026년 확장형 전자출판물 제작 지원 사업신청서** \* 양식 파일 내 세부 안내 참고 필수
- 사업자등록증
- 출판사신고필증
-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 심사 및 선정

**심사 방법** : 각 분야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 2단계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심사 절차 및 기준**

- 1차 서면평가 : 고득점순(70점 이상)으로 최종 선정 과제 수의 2배수 내외 선정

평가 항목	주요 평가 요소	배점(점)
기획성	· 보존 및 확산 가치가 있는 콘텐츠 여부(10) · 원고의 완성도 및 확장 가능성(10) · 전자출판물 특성을 살린 기획 적합성 및 구성 완성도(10)	30
시장성 및 유통전략	· 타겟 독자 설정 및 접근 전략의 구체성(10) · 유통·마케팅·확산 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10)	20
구현 가능성	· 제시 기간 내 서비스 구현 가능 여부(10) · 디지털 요소 구현 역량 및 기술적 실현 가능성(10)	20
사업계획 타당성	· 추진 일정 및 단계별 로드맵의 구체성(10) · 사업비 산출 근거의 명확성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10)	20
혁신성	· 기존 전자책 대비 차별화된 요소 및 새로운 시도 여부(5) · 현 상용화된 디지털 기술·기기 기능 활용의 창의성(5)	10

- 2차 발표평가 : 별도 PT자료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고득점순(70점 이상) 최종 선정  
 \* 콘텐츠 기획의도 및 멀티미디어 효과 등 기능을 보여주는 콘텐츠 데모 시연 가능

평가 항목	주요 평가 요소	배점
기획성	· 보존 및 확산 가치가 있는 콘텐츠 여부(10) · 원고의 완성도 및 확장 가능성(10) · 전자출판물 특성을 살린 기획 적합성 및 구성 완성도(10)	30
시장성 및 유통전략	· 타겟 독자 설정 및 접근 전략의 구체성(10) · 유통·마케팅·확산 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10)	20
구현 가능성	· 디지털 요소 구현 역량 및 기술적 실현 가능성(10) · 스토리보드, 화면 설계 등 시각적 구성의 구체성(10)	20
사업계획 타당성	· 추진 일정 및 단계별 로드맵의 구체성(5) · 사업비 산출 근거의 명확성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5) · 수행사, 참여인력의 사업 수행역량 및 추진 의지(5)	15
혁신성 및 확장성	· 기존 전자책 대비 차별화된 요소 및 새로운 시도 여부(5) · 현 상용화된 디지털 기술·기기 기능 활용의 창의성(5) · 2차 저작물 및 다양한 형식으로서의 확장(OSMU) 가능성(5)	15

### 심사 제외 및 선정 취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될 시 선정 취소 및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1. 콘텐츠 요건 및 권리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진흥원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 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며 ‘멀티미디어형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 등 기존 유사 사업은 중복지원으로 간주함
- 사업 공고일 이전에 제작이 완료되었거나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 경우
- 단일 콘텐츠로서 완결성이 없는 시리즈 중 일부, 단행본 일부 챕터 또는 요약본의 경우
- 저작권자와의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이 명확하지 않거나, 표절 및 복제 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신청 자격 및 기관 상태

- 신청사가 국세, 지방세 또는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신청사가 부도, 휴업, 폐업 상태이거나 파산·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공고일 기준 국고보조금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미납하고 있거나, 진흥원과의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참여 제한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행배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 3. 수행 및 협약 이행 관련

-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제작 일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거나 과제 수행을 임의로 중단한 경우
- 출판사에서 제작사에 제작비를 선지급하지 않고, 수익배분 방식으로 대체하는 경우

### 4. 제출서류 및 기타

-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 관련 지침 및 법령(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 제한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명백한 선정 취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보조금 집행 및 사업 수행 관리 지침

### 보조금 교부

- **분할 교부** : 지원금은 2회 분할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협약 체결 후 1차 보조금 50%를 지급하며, 최종평가 통과 및 정산증빙자료 제출 시 잔여 50%를 2차로 교부함
- **금액 확정** : 지원금은 신청액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신청액의 감액은 가능하나 증액은 불가
- **시스템 이용** : 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절차에 따름

## 보조금 집행

- **전용 통장/카드** : 선정사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연동되는 별도의 보조금전용통장을 개설해야 하며, 해당 계좌 및 e나라도움 계정과 연동된 보조금전용카드(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해야 함
- **집행 방법** : 보조금은 본 사업의 수행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신고한 입·출금 계좌에서 거래처로 즉시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만 집행하여야 함
- **인정 범위** : 진흥원이 정한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 범위 내에서만 편성·집행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 내에 집행된 금액에 한하여 인정함
- **인건비 한도** :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70% 이내로 편성
- **광고비 한도** : 광고비는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편성
- **참여율 제한** : 참여 인력의 타 기관 과제와 본 사업 참여율 합계는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인건비 중복 수급 불가)
- **지급/거래 금지 대상** : 아래 대상자에게는 인건비 계상 및 업체 거래 절대 불가
  - 대표자 및 임직원의 친인척\*
  - 상기 대상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 포함)
    -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용역 계약** : 용역비(일반/연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2천만 원 초과 시 수의계약 불가하며 조달청을 통한 계약 체결 및 집행
- **근거 규정** : 이외 사업 공고, 협약서 및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지침에 의거하여 편성 및 집행
- **점검 및 감사** : 진흥원은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 감사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선정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통지의무 및 승인

- **사업변경 승인** :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요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비의 배분(예산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그 밖에 협약내용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 기간 연장 불가** : 본 사업은 협약 체결 시 정해진 사업 기간 내 완료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 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보고 및 임의 변경 시 제재** :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진흥원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만약 사전 승인 또는 보고 없이 임의로 사업 내용이나 예산을 변경한 사실이 사후 확인될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보고 및 제출 의무 : 선정사는 협약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며, 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및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 상세 내역은 협약서에 따름
  - ※ 최종 결과물 기준 : 신청사가 사업신청서 제출 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과제 난이도 및 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진흥원과의 협약을 통해 최종 완수 기준을 확정함

##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및 벌칙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부정수급 행위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 기타 의무사항(선정사 준수사항)

-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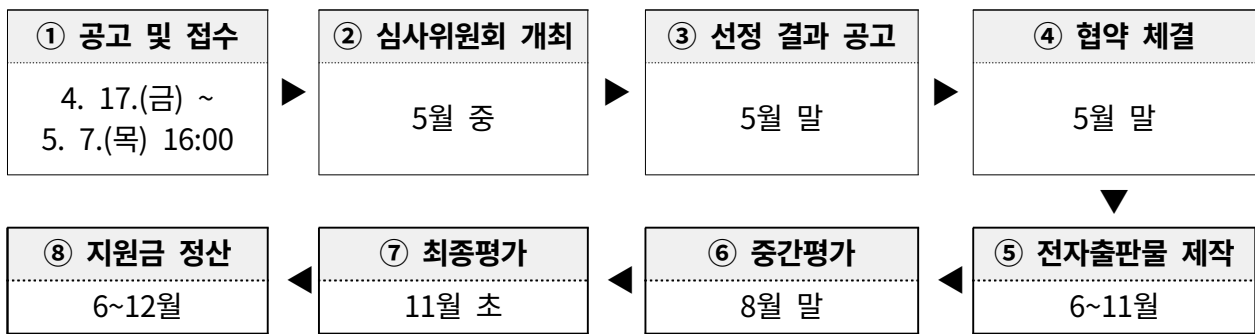
- **성희롱·성폭력 방지**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이행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3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다만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표준계약서 사용** : 저작권자 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며, 미사용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지원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지원 사실 표기** :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된 전자출판물이 국내외 유통·공개될 경우, 진흥원의 지원 사실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 상세한 표기 위치 및 로고 파일은 선정 후 매뉴얼을 통해 별도 제공
-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 선정사는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지원금 보호를 위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증권 미제출 시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선정사 자부담
- **e나라도움 교육** : 선정사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 선정사는 진흥원이 정하는 일정과 방식에 따라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추진 일정



## 유의사항

- 본 사업 신청 및 수행에 있어 사업공고 및 안내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사에 있습니다.
  - ※ 제출 서류, 기입 정보, 날인 또는 서명 등 명확히 확인 필요
- 제출 완료된 신청서 및 자료는 회수가 불가능하며, 제출을 완료하면 지원 이력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내 서명은 자필 서명, 도장, 전자 서명(서명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로그 등이 확인되어야 함), 전자 도장만 허용합니다.
  - ※ 단순 글꼴 입력, 그리기 개체(도형 등)를 활용한 서명은 미제출로 간주
- 본 사업의 결과물 일부(섬네일, 성과물 표지 등)는 진흥원 또는 진흥원과 제휴를 맺은 기관에서 활용·전시되거나, 각종 행사 등에 전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성과 관리를 위해 선정사는 본 사업 종료 후 진흥원 요청 시 운영 실적(매출 및 이용자 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선정사는 사업비 사용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해 진흥원이 지정한 전문 회계 법인을 통해 검증받아야 하며, 진흥원은 선정사의 e나라도움 월별 사업비 집행을 상시 점검합니다.
- 선정된 사업자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과제수행을 임의로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필요한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신청 불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보조금관리지침」 등 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해 수행되며 선정사는 관련 법령을 숙지 및 준수해야 합니다.

## 문의

- 미래산업팀(063-219-2759, ebookbaro7@kpipa.or.kr)